

ISO 14000

국제환경표준 “환경감사 시스템 (Environmental Auditing System)” 동향(Ⅱ)

환경경영체제 규격(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의 적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3자인 중, 내부감사, 감사자의 자격요건 등을 SC2(환경감사 위원회)는 1995년 6월 24일에서 6월 29일까지 24개국 정회원국가와 중국 등 3개 옵저버국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슬로에서 개최되었다. 오슬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환경감사의 일반원칙에 관한 위원회 초안(CD=Committee Draft)과 EMS 감사절차에 대한 CS, 환경감사인 자격기준에 관한 3개의 CD를 DIS(=Draft of International Standard)로 결정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이들 DIS/ISO로 결정된 환경감사 규격을 전제하기로 한다.

ISO/DIS 14012 환경감사의 지침

- 환경감사인의 자격 기준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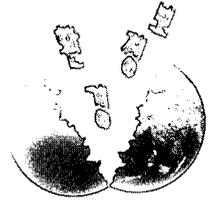
환경경영체제와 그것의 환경감사에 대한 적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경영체제 감사인의 자격기준에 대한 지침이 필요시 된다. 이 국제규격은 그러한 지침을 제공할 목적을 갖는다.

내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과 똑같은 능력을 갖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이들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업)규모, 성격, 복잡성 그리고 조직의 환경영향
- 조직내의 관련 전문성과 경험의 발전 정도

1. 범위

이 국제규격은 환경감사인과 선임감사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국제규격은 내부 및 외부 감사인에게 적용된다. ISO 14011의 여러부분에서 기술된 환경감사를 실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선정에 적용된다. 감사팀의 선정과 구성에 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사항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ISO 14010)과 환경경영체제감사(ISO 14011/1)에 관한 ISO지침의 개발과 조화하여 개발되어져 왔다. 환경감사의 다른 유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개발되어지면 향후 수정될 수 있다.



2. 관련규격

이 표준의 내용 준거로서 이 국제표준(ISO 14012)의 규정을 구성하는 조항들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표준들이 있다. 공포되는 시점에서 언급된 판은 효력을 갖는다. 모든 표준은 (적절한 시간을 두고) 변화되게 되며, 이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합의한 당사자는 아래에 언급한 표준의 최신판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한다. IEC와 ISO의 구성 회원국은 현재의 유효한 국제표준의 등록부를 유지한다.

ISO 14001:199X, 환경경영체제-사양서와 사용지침
ISO 14010:199X, 환경감사지침-환경감사의 일반원칙
ISO 14011-1:199X, 환경감사지침-감사절차-1부:EMS감사

3. 정의

이 국제표준의 목적에 비추어 ISO 14010과 ISO 1401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가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함께 적용된다.

3.1 감사인(환경): 환경감사를 수행할 자격이있는 사람

3.2 선임감사인: 환경감사를 수행하고 관리할 자격있는 사람

3.3 학위: 중등교육 후 최소 3년의 공식적 정상근무, 혹은 이와 동등한 파트타임 연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획득한 국가적,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3.4 중등교육: 국민학교교육 또는 중등교육 후 맞이하게 되는 국가교육체계의 일부로 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들어가기 직전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4. 교육과 업무경험

감사인은 적어도 중등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을 끝마쳐야 한다.

감사인은 적절한 업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 열거

는 것 중 몇몇 또는 그 전부에 대해 기술(Skills)을 개발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무경험.

- 환경과학과 기술
- 설비가동의 기술적, 환경적 측면
- 환경법, 규정 그리고 관련문서가 요구하는 사항
- 환경경영체제와 표준
- 감사절차, 과정 그리고 기법

중등교육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마친 감사인은 최소 5년간의 적절한 업무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같은 요건은 정상교육 또는 파트타임 교육을 만족할만하게 수료함으로써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3.1절에 목록으로 주제가 나와 있다. 어떠한 그런 주제를 강조하는 교육의 전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전체 완화조치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학위를 획득한 감사인은 최소 4년간의 업무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같은 요건은 정상교육 만족할만큼 파트타임 교육을 만족할만하게 수료함으로써 줄어들 수 있는데 그 교육 내용은 3.1절에 목록으로 주제가 나와 있다. 이때 어떠한 규정완화 조치도 2년을 넘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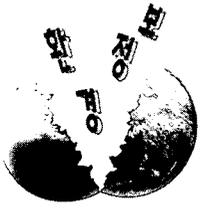
5. 감사의 훈련

이상의 기준에 더하여, 감사인은 환경감사를 실행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공식적 훈련과 업무를 직접 하면서 하는 훈련(OJT) 두 가지를 완성해야 한다. 그런 훈련은 감사인이 속한 조직 또는 외부 조직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훈련을 통해 이룩한 능력은 부록 A에 규정된 그런 방법, 예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5.1 공식적 훈련

공식훈련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환경과학과 기술
- 설비가동의 기술적 · 환경적 측면
- 환경법, 규정 그리고 관련문서가 요구하는 사항



- 감사가 실행되어지는 환경경영체제와 표준
- 감사절차, 과정 그리고 기법.

이같은 영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있어 공식적 훈련 요건은 만일 (감사인의) 능력이 인정시험 또는 관련전문자격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면 유보할 수 있다.

5.2 OJT훈련

감사인은 총20일간의 환경감사실무, 그리고 최소 4번의 환경감사와 동등한 OJT 훈련기간을 마쳐야 한다. 이것은 선임감사인의 감독과 지도하에 감사준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OJT 훈련은 3년을 연속하여 이 기간내에 이루어야 한다.

6. 교육, 경험 및 훈련에 대한 객관적 증거

개인은 그의 교육, 경험 그리고 훈련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개인 특성과 기술(기능)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개인특성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말이나 문서로 개념과 생각을 명백히 표현하는 능력
- 감사가 수행되는 지역 또는 국가의 관습과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및 재치와 사립같은 그러한 감사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對人관련 기술.
- 감사인의 책임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능력
- 감사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 조직 기술
-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건전한 판단에 도달할 능력

8. 선임감사인

선임 감사인은 감사과정에 대해 지도력을 갖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확실히 하는데 필요한 그런 개인 자질과 기술을 철저히 이해하고 응용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추가기준에 적합한 감사원이어야 한다.

- 면접, 관찰, 참고자료 그리고 품질보증계획하에 이루어진 환경감사성과의 평가같은 그런 수단에 의해 감사 프로그램관리 또는
 - 총 15일과 동등한 추가 작업, 최소 3가지 이상의 완전한 환경감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 선임감사원의 감독과 지도하에 선임감사원의 행위를 하고, 적어도 3가지 이상의 하나에 참여한 사람.
- 이같은 선임감사인에 대한 추가 기준은 연속 3년 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9. 능력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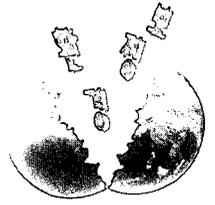
감사원은 다음에 대한 그들 지식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관련 환경과학 및 기술 측면.
- 시설 가동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환경적 측면.
- 관련 환경법, 규정 및 관련 문서.
- 환경경영체제 및 관련 규격.
- 감사과정, 절차 및 기법.

그들은 감사를 실행하는데 있어 그들의 경험이 통용 (current)되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다 재 충전하는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10. 적절한 업무배려/관심

감사인은 적절한 전문적 업무배려를 하여야 하며, ISO 14010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처럼 적절한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



11. 언어

어떤 감사인도 그들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언어로 효과적으로 의사전달할 수 없는 지지 받지 못하는 감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필요 언어 능력을 갖는 사람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감사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부속서 A (정보차원) 환경감사인의 자격평가

1. 일반사항

국제표준에 언급된 환경감사인의 자격평가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는데 본 부속서의 목적이 있다.

2. 평가과정

이 국제규격은 자격평가 과정의 운용과 그 성취도에 의해 발전 될 것이다.

여기서 규정하는 이 평가 과정의 목적은 환경감사인의 자격평가에 관한것으로서 내부 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평가과정은 개별적으로나 현재의 환경감사 운용의 경험과 이해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환경감사인평가과정은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교육, 업무경험, 훈련 및 개인의 자질평가

환경감사인이 필요한 교육, 업무경험, 이 국제규격에서 정한 훈련과 개인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야할 것이다.

이 평가과정에는 아래에서 언급된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 지원자와의 면접
- 필기 그리고/혹은 구술시험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의한 평가
- 지원자의 논술(Written work) 검토
- 전(前) 고용주, 동료등과의 토의
- 가상배역 시험 (Role Playing)
- 실제 감사상황에서의 지원자 형태 평가
- 교육기록, 국제규격에서 정한 훈련기록의 검토
- 전문(기술) 자격과 인증에 대한 고려 (추가점수)

* 부속서 B(정보차원) 환경감사인 등록 단체

1. 일반사항

이 부속서는 환경감사인의 등록에 있어서의 발전을 위한 지침이다.

2. 감사인 등록

등록단체는 독립적이고 일관된 등록규정에 의거하여야 하며, 아래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등록단체는 환경감사인을 직접 등록하거나 이 국제규격을 포함하는 환경감사인 등록기준을 가진 다른 단체를 승인 할 수 있다.

등록단체는 이 국제규격 "부속서 A"를 포함하여 환경감사인평가를 해야하며 이는 품질보증의 대상이 될수있다.

등록단체는 이 국제규격에서 언급한 사항을 만족하는 환경감사인을 지속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